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98
----------	-------

발의연월일 : 2025. 10. 24.

발의자 : 윤준병 · 송옥주 · 박용갑
이병진 · 문대림 · 임호선
한정애 · 강준현 · 위성곤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오늘날 정보통신망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 생활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대조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혐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혐위조작정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나아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혐위조작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그 파급력 또한 광범위하여 국민적 불신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혐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시책에 혐위조작정보 근절 및 이용자 보호를 포함하며, 이를 공개·유통·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거짓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 관계를 오인하게 하거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게 하는 정보, 이미 사실 여부가 확인됐음에도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하여 조작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사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허위조작정보 근절 및 허위조작정보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2항제7호의3 신설).
- 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 허위조작정보 삭제를 명할 수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1 신설).
-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의12 신설).
- 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안 제70조제3항 삭제).

바. 허위조작정보를 공개 또는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거짓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 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

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다. 이미 사실여부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

제4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허위조작정보 근절 및 허위조작정보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력정보 등”을 “폭력정보·허위조작정보 등”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 중 “정보를”을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을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44조의4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허위조작정보

제44조의7 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2의2. 허위조작정보

제44조의9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허위조작정보

제5장에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의 공개·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위조작정보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

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4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해당 조치의 내용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제2항 또는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6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2(손해배상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
4.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
5.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6.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 사회적 이익

제7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를 공개 · 유통한 자

제7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4조의11제6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제72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
1. ~ 13. (생략) <u><신설></u>	1. ~ 13. (현행과 같음) <u>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u> <u>가. 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거짓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 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u> <u>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u> <u>다. 이미 사실여부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의2. (생 략) <u><신 설></u>	1. ~ 7의2. (현행과 같음) <u>7의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허위조작정보 근절 및 허위조작정보로부터의 이용자 보호</u>
8. · 9. (생 략) ③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 · 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 ----- ----- 폭력정보 · 허위조작정보 등----- ----- ----- ----- ----- ----- -----.
1. ~ 4. (생 략) ②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

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③ ----- 제1항
에 따른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

-----.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현행과 같음)

(2) _____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위조작정보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44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해당 조치의 내용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제2항 또는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6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영업 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

(8) 그 밖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12(손해배상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u>를 인식한 정도</u>
2.	<u>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u>
3.	<u>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u>
4.	<u>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 상태</u>
5.	<u>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u>
6.	<u>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 사회적 이익</u>
제70조(별 칙) ① ~ ② (생 략)	제70조(별 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	③ <삭 제>
제71조(별 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별 칙) ① ----- ----- ----- ----- ----- -.
1. ~ 10. (생 략) <신 설>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u>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를 공개 · 유통한 자</u>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